



제267회 임시회
2008. 1. 28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4일

□ 제안이유

-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(안 제2조제1항제1호)
- 나. 위원회의 심사·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공직자로 변경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다.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조정(안 제3조제2항)
 - (1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
 - (2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

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

- 라.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고, 법령의 인용조항 변경(안 제6조제2항)
- 마. 전년도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(안 제9조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,
 - 위원회 위원의 시민단체 추천 위촉대상 추가 및 심사대상 공직자 범위변경과 심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